

『구미시 시금고 지정 지역사회 공헌사업 기탁금 출연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2.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7회계연도 세출예산의 출연 여부에 대하여 구미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

3. 주요내용

- 2017회계연도 세출예산 구미시 시금고 지정 지역사회 공헌사업 기탁금 출연 계획
 - 출연 예정액 : 금550백만원
 - 출연 필요성
 - 지역우수인재 육성과 명문학교 육성지원으로 구미교육발전 기여
 - 기탁금 출연에 따른 이자수익으로 장학생 선발 및 지급에 기여
 - 출연근거법령
 - 구미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5조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8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 「구미시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제7조
 - 「구미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5조
- 입법예고 : 해당 없음

5.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7회계연도 세출예산의 출연 여부에 대하여 구미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임.

○ 주요 내용은

구미시 시금고 지정 지역사회 공헌사업 기탁금 지원을 위하여 2017회계연도에 550백만원(대구은행 400백만원, 농협150백만원)의 출연을 하고자 하는 것임.

○ 검토결과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구미시 시금고 지정 지역사회 공헌사업에 관해 2017회계연도 세출예산의 출연 여부에 대하여 구미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지역 우수 인재 육성을 위한 시금고와 자치단체간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기탁금 출연에 따른 이자수익으로 장학생 선발 및 지급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